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9.

발 의 자 : 정춘생 · 황운하 · 이해민
박은정 · 서왕진 · 차규근
김준형 · 김선민 · 신장식
백선희 · 강경숙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초고령화 시대, 만혼 시대,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,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, 장애형제,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‘이중돌봄’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 등).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선택을”을 “선택과 이중돌봄(자녀·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·조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, 형제·자매 등의 질병, 장애, 사고,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) 상황 등을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 상황 조사

제15조제3항 중 “관계인의”를 “관계인으로부터”로,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이 때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) ① (생략)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·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· <u>선택</u>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	제3조(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선택과 이중 돌봄(자녀·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·조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, 형제·자매 등의 질병, 장애, 사고,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) 상황 등을</u> 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 제14조(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) ①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	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5조(등급판정 등) ①·② (생략)

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·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,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·⑤ (생략)

제18조(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)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
상황 조사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등급판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관계인으로부
터-----있으며, 이
때 이중돌봄 가정의 경우 돌봄
상황에 대한 의견을 포함할 수
있다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) -----

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정하여야 한다.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3.</u> (생 략)	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3.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이중돌</u> <u>봄 상황</u> 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--	---